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114호

문서번호	계약부-2486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6.02.26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계약부장	경영지원처장	기획경영본부장	
			02/26	
이익흥	박태홍	문완식	김우진	
협 조	재정관리부장	장한수	예산자금부장	조한보

2016년 선금 지급계획

서울특별시 SH공사
(경영지원처 계약부)

2016년 선금 지급계획

I. 선금의 의의

-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,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,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**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대금**

II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(대가의 지급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(대가의 지급)
- 지방재정법 제73조(선금급과 개산급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(선금급)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예규 제6장 선금·대가 지급요령)
- 행정자치부 공기업과-691(2016.02.19) : 2016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 통보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1891(2016.02.22) : 2016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 통보

III. 지급대상 및 범위

지급대상

-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
-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

-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
 - ▶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

□ 지급범위

-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하되
-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 ~ 50%는 의무적으로 지급

(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)

선금 의무지급율	공 사	물품제조 및 용역	비 고
계약금액의 <u>30%이상</u>	100억원이상	10억원이상	※채권확보 (증권, 보증서제출)
계약금액의 <u>40%이상</u>	100억원미만 ~ 20억원이상	10억원미만 ~ 3억원이상	
계약금액의 <u>50%이상</u>	20억원미만	3억원미만	

□ 선금지급의 예외

-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『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』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.
- “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“
 -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
(단,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한다.)
 -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
(단,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한다.)
 -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

IV. 지급방향 및 규모 등

□ 선금지급 방향

- 차입경영에 따른 자금수급 계획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건설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자 함.

□ 이행예정금액 대비 선금 의무지급 규모

(단위:천 원)

구분	의무지급률 (%)	2016년도 이행예정금액	2016년 의무 지급액	비 고 (건수/'16년도 선금지급액)
공사	30%	173,498,550	52,049,565	○ 2015년 선금지급액 : 총18건 50,669,067천원 - 공사(14건/ 48,202,275) - 용역(4건/ 2,466,792)
	40%	6,895,869	2,758,348	
	50%	799,123	399,562	
	소계	181,193,542	55,207,475	
용역	30%	1,699,626	509,888	※ 2016년 선금지급 예상액은 2015년 대비 5,048,296천원(증)
	40%	0	0	
	50%	0	0	
	소계	1,699,626	509,888	
합계		182,893,168	55,717,363	

□ 선금지급의 필요성

- 차입경영으로 선금지급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나,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경기 변동 보완 및 경제 활력제고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
V.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

□ 기성금의 공제

-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(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)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

□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

-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.
-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국내외 연수,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
 -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
 - 원자재가격 급등, 환율, 물가변동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VI. 채권의 확보

□ 채권확보 방법

-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.
-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는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

□ 선금보중에 따른 이자의 계산

-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(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 예금이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한다.
-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(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보증기간

- 선금에 대한 보증·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,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.

-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서에 이행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·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·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.

VII. 선금의 사용 및 정산

□ 선금 사용방법

- 선금의 사용(선금지급 조건)
 -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
 -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
-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
-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함
 -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금지

□ 반환청구 및 재지급

-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함
(다만,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함)
 -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
 -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
 -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함.

-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함.
 [다만 『건설산업기본법』 및 『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행정부 예규 『계약집행기준』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“2-가”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음]
-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.
- “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“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,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.

□ 선금의 정산

- 기성·기납 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

$$\text{※ 선금 정산액} = \text{선금액} \times \frac{\text{기성(기납)부분의 대가상당액}}{\text{계약금액}}$$

VIII. 행정 사항

-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준용.
- 본 방침 결재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은 본 방침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며, 상위 규정 및 공사의 사정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된 방침에 의함.

- 붙임 1. 2016년도 선금지급 계획 세부자료
 2. 2016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 통보(행자부 공문)
 3. 2016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 통보(서울시 공문). 끝.